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8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7387)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항공기 출입문 · 탈출구 · 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6조) ...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3
2)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 협박 · 위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6
3)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7
4)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11
다. 국토교통부 의견	11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738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9.
3. 회 부 일 : 2024.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Ⅲ. 검토의견

1.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안 제46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승객으로 하여금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에 대한 처벌을 (1)폭행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2)그러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1)전자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2)후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u>10년 이하</u> 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u><신설></u>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u>1년 이상 10년 이하</u> 의 징역에 처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u>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입법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지난 2023년 5월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착륙 직전 승객의 출입문 개폐장치 불법 조작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을 겪은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이던 항공기와 2023년 11월 미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 시도 2건이 더 발생¹⁾하였음.

현행법 제23조제2항²⁾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6조³⁾에서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5월에 발생하였던 비상문 개방 사건의 경우 1심 및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고, 6월에 발생했던 비상문 개방 시도 사건의 경우 1심 및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11월에 발생한 비상문 개방 시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음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1) SBS NEWS, 10대 승객 "가슴 답답"…또 항공기 비상구 난동, 2023.6.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517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연합뉴스, 또 비행 중 여객기서 문 개방 시도…이번엔 마약투약 20대(종합), 2023.11.23.
<https://www.yna.co.kr/view/AKR20231123092651065>

2)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법률신문, [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2023.11.21.

<https://www.lawtimes.co.kr/news/193426>

동아일보, 상공 224m서 비행기 문 연 30대…2심도 집행유예, 2025.1.17.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7/130884513/2>

KBS뉴스,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필로폰 중독' 10대 1심서 실형, 2023.10.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9492>

YTN,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4.3.22.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314260176

연합뉴스, 비행 중 여객기 문 열려던 20대 집행유예…검찰 항소, 2024.7.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2040700065>

탈출구·기기 조작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 불법조작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⁵⁾.

【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 】

구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
	사상 발생	사상 미발생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개정안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내 출입문·탈출구·기기 등 조작 또는 그 시도는 총 9건 발생하였으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되었다는 설명임.

2)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49조제1항6)은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금지하는 기장 또는 기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적정 처벌 수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지난 2024년 7월 제안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855호,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벌칙을 상향

6)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하되, 폭행·협박·위계행위를 분리하여 처벌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⁷⁾

현행	주호영의원안(2201855)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신설>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신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다수 존재함.

그 가중처벌의 수준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1조는 항공시설 파손·조

7) 동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에 기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안전을 해치는 행위(제43조),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제49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음에 따라 동 개정안과 구성요건이 중첩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작 방해에 대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임.

「항공보안법」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현행 제39조제1항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수준을 감안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및 제62조⁸⁾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함.

8)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항공안전법」⁹⁾, 「철도안전법」¹⁰⁾,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¹⁾ 등은 위반행위로 사망 또는 사상에

9) 「항공안전법」 제139조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항공안전법」 제138조)의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 법 제41조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안 제46조제1항의 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항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顛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 「철도안전법」 제80조제1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정안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철도안전법」 제78조제1항)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사상’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제7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17.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파괴, 적재 화물에 안전을 위협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상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상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협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치사죄, 상해·치상죄) ②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위반행위로 인한 사상 시 가중처벌 입법례 】

법명	범죄행위	형량		
		사망	상해	사상 미발생
항공보안법	항공시설 파손하거나 조작 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운항 중 항공기 파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 출입문·기기 조작(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개정안)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1년 이상 10년 이하	
항공안전법	항행 중 항공기 추락·전복·파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철도안전법	차량 소훼·탈선·충돌·파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선박위해 처벌법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파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년 이상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 파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종합하면, 가중처벌의 수준을 규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입법례의 처벌 수준, 위반행위의 경중,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으로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처벌을 강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기내 출입문 등 조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인명사고 예방과 항공보안 확보를 위해 처벌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내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까지 최하 1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타 법과의 형평성이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고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유지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